

운영규정의 개요

기관명	경북재가요양원	장기요양기관번호	34711000227
대표자	김민서	시설장	김민서
지정일자	2013.04.09	지정형태	개인
시설정원	없음	시설규모	대지 1057㎡ 건물면적 58.23㎡
기관연락처	054)262-1200	급여종류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팩스번호	054)262-1220	메일주소	kms56950@naver.com
사업장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861번길 1(흥해읍) 2층		
주차시설	자가 운전시 세종황제 맨션 주차장 이용 가능	교통편	308번(기본)- 한동맨션 하차 5000번(급행)-마산사거리 하차

시설 현황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 실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	1	0	0	0	0	1	0	0

차량 현황	차량 연번	차량 명칭	구입연도	차량제조사	차량명	개조설계 및 시행사	취득원가		차량번호
							차량가	개조비용	
	-	-	-	-	-	-	-	-	-

차량 장비 현황	욕조	이동욕조	급수탱크	급탕장치	보일러시설	샤워기시설	리프트	기타
	-	-	-	-	-	-	-	-

인력현황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방문인력	1명	3명	1명		62명	-	-	-	-	-
방문목욕					2명					
방문간호					-					

운영목적

이용자(재가급여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통하여 편안한 노후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관한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가능하다.
3.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5. 계약내용변경사항(유효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다만, 수가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시 시설장은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를 안내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월 한도액 안에서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일반 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0% 감경 대상자는 9%, 60% 감경 대상자는 6%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5.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4) 기관의 만족도 조사 및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6)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서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에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1.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용자를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관 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면책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ㄱ.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ㄴ.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ㄷ.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ㄹ.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 이라 함)” 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가입기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요양기관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재가)	2023-409336-000	2023-06-12 ~ 2024-06-12

[별지 1 월 이용료 부담액]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원)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방문요양	수가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종일방문요양	94,180원

방문목욕	수가
60분미만(차량이용 차량내)	67,740원
60분미만(차량이용 가정내)	61,070원
60분미만(가정내)	38,140원
60분이상(차량이용 차량내)	84,670원
60분이상(차량이용 가정내)	76,340원
60분이상(가정내)	47,670원

방문간호	수가
30분 미만	40,76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1,110원
60분 이상	61,490원